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1. 24. 2006고합1352,295(병합),1351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사】구본선외 5인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(유) 태평양 담당 변호사 노영보외 20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157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1, 3은 각 무죄.

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,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명목의 금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의 점은 각 무죄.

피고인 1,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1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